

1 .

가

· ·

2 .

가.

가

가

·

·

가 ( 1 2 가 ).

· 가

·

( 2

2 ).

3 .

가.

:

·

:

·

:

·

·

:

·

,

# 가

가 .

" 가 " "

" 가 " .

1 1 " 가 , " " 가

. 2 2

( " " )" , " " " " " .

1 2 가 " 가 ,

" 가 " " 가

( . )

가 " .

1 2 " 가 , " " 가

" .

2 " " " " , 1

" " " . " .

2 1 가 "

" " . .

" ,

" " " . . " ,

" , " " "

.

2 2 가 " " " " ,

" " " .

" .

2 2 " " "

.

" .

3 " " "

" , 1 "

, " "

" , 2 " "

" " .

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국가유공자우선채용에관한지침</u></p> <p>제1장 총 칙</p> <p>1. 목 적</p> <p>이 훈령은 <u>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가 “국가유공자와 그 유·가족”(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함)을 우선채용해야 할 의무를 이행토록 촉구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호국의를 함양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2. 기본지침</p> <p>가. <u>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직, 기능직 공무원</u>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“<u>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</u>”에서 정한 법정인원의 범위내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 채용하고 그 결과를 관할 보훈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.</p> <p>나. <u>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</u> 취업보호대상자를 스스로 채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국가유공자등우선채용에관한지침</u></p> <p>제1장 총 칙</p> <p>1. 목 적</p> <p>이 훈령은 <u>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초·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(이하 “학교”라 한다)</u>----- ----- --애국정신----- -----</p> <p>2. 기본지침</p> <p>가. <u>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학교의 기능직공무원 또는 교직원(교원을 제외한 다. 이하 같다)의 임용권자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교직원을 채용하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</u>----- ----- -----</p> <p>나. <u>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학교의 기능직공무원 또는 교직원의 임용권자는 -</u></p>

관할 보훈관서의 장에게 추천  
을 의뢰한다.

-----  
-----

제2장 관계부처 조치사항

제2장 관계부처 등의 -----

1. 총무처

1. 행정자치부·교육부 및 교육청

가. 총무처장관은 각 행정기관  
에 대한 정기인사 감사시 취  
업보호대상자의 우선 채용여  
부를 확인, 점검한다.

가. 행정자치부장관·교육부장  
관·교육감 및 교육장은 행정  
기관 및 학교에 대한 인사관  
련 감사를 하는 때에는-----

나. 총무처장관은 취업보호대상  
자의 우선채용실적이 현저하  
게 부진하거나 고용직, 기능  
직 공무원 충원시 취업보호대  
상자를 우선 채용하지 아니한  
행정기관에 대하여는 그 이행  
의 촉구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.

나. 행정자치부장관·교육부장  
관·교육감 및 교육장-----  
-----취업보호대  
상자-----  
-----

2. 국가보훈처

2. 국가보훈처

가. 국가보훈처장은 각 행정기  
관의 취업보호대상자채용실태  
를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한다.

가. ----- 행정기관  
및 학교-----  
----- 행정자치부장관·교  
육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의  
위원장-----

나. 국가보훈처장은 취업보호대  
상자의 우선채용실적이 현저  
히 부진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 
는 총무처장관에게 확인감사

나. -----  
-----  
-----행정기관 및 학교에  
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·

를 의뢰할 수 있다.

교육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-----.

제3장 각 중앙행정기관 공통사항

제3장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사항

1.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용직,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취업보호대상자의 우선 채용에 솔선수범하도록 하급기관에 지시한다.

1.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능직공무원-----  
-----  
-----.

2.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하급기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행정감사시 취업보호대상자의 우선 채용여부를 확인, 점검하고 그 이행의 촉구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.

2.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